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9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3개를 지정하였다.

2002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19개로 「한국전력공사」, 「KT」,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7개 공기업집단과 현대중공업이 2002. 2. 28. 「현대」로부터 친족분리 되면서 기업집단을 형성, 신규지정 되었고, 「포항제철」, 「롯데」, 「쌍용」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나 공정거래법시행령상의 지정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지정제외 되었다.

한편,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43개 중 「한국전력공사」, 「KT」,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현대중공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농업기반공사」, 「담배인삼공사」, 「대상」, 「동원」, 「KCC」, 「대성」, 「한국타이어」, 「부영」 등 16개 기업은 신규지정 되었고, 「쌍용」, 「대우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 지정제외 되었다.

2001년도 30대 기업집단 중 2002년도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에 해당되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집단은 16개로, 「고합」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이어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2002년도 지정 기업집단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

액은 2001년도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자산총액(392.1조원)에 비해 105.8조원(27.0%) 증가했는데, 이는 금년부터 「한전」, 「KT」 등의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집단이 지정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계열회사수는 356개로 2001년도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수 대비 79개사가 감소하였는데, 자산규모에 비해 계열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전」, 「KT」등 공기업집단의 신규지정이 계열회사 감소요인이 되었다.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2001년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비율(165.0%) 대비 39.9%p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업집단이 신규지정 된데 주로 기인하며, 당기순이익(율)은 2001년도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당기순이익(율) 대비 5.7조원(1.4%p)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익률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신규지정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2002. 4. 1. 기준, 십억원)

집단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집단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한국전력공사	14(-)	90,889(-)	대림	15(17)	4,985(5,395)
삼성	63(64)	72,351(69,873)	코오롱	29(25)	4,589(4,640)
엘지	51(43)	54,484(51,965)	제일제당	28(30)	4,316(4,763)
에스케이	62(54)	46,754(47,379)	동국제강	6(8)	4,267(4,342)
현대자동차	25(16)	41,266(36,136)	하나로통신	8(7)	4,201(3,369)
KT	9(-)	32,617(-)	한솔	12(19)	4,162(6,983)
한국도로공사	4(-)	26,353(-)	농업기반공사	2(-)	4,081(-)
한진	21(19)	21,596(21,307)	담배인삼공사	2(-)	3,954(-)
포항제철	15(15)	20,835(21,228)	신세계	10(9)	3,935(3,221)
롯데	32(31)	17,964(16,694)	동양	16(9)	3,845(5,107)
한국토지공사	2(-)	14,915(-)	현대백화점	10(15)	3,262(2,858)
대한주택공사	2(-)	14,493(-)	현대산업개발	10(9)	3,033(4,070)
현대	12(26)	11,784(53,632)	영풍	24(24)	2,831(2,897)
금호	15(17)	10,608(11,606)	대상	12(-)	2,364(-)
현대중공업	5(-)	10,323(-)	동원	17(-)	2,322(-)
한화	26(25)	9,892(11,496)	태광산업	18(15)	2,315(2,598)
한국수자원공사	2(-)	9,521(-)	KCC	6(-)	2,311(-)
한국가스공사	2(-)	9,134(-)	동양화학	19(22)	2,293(2,826)
두산	18(18)	8,988(11,192)	대성	32(-)	2,126(-)
동부	21(19)	6,083(5,831)	한국타이어	6(-)	2,102(-)
현대정유	2(2)	5,884(7,243)	부영	4(-)	2,102(-)
효성	15(15)	4,987(4,950)	합 계	704(594)	611,117(423,601)

주: ()안은 2001. 4. 2. 지정시 수치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2002. 4. 1. 기준, 십억원)

집단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집단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한국전력공사	14(-)	90,889(-)	현 대	12(26)	11,784(53,632)
삼 성	63(64)	72,351(69,873)	금 호	15(17)	10,608(11,606)
엘 지	51(43)	54,484(51,965)	현대중공업	5(-)	10,323(-)
에스케이	62(54)	46,754(47,379)	한 화	26(25)	9,892(11,496)
현대자동차	25(16)	41,266(36,136)	한국수자원공사	2(-)	9,521(-)
K T	9(-)	32,617(-)	한국가스공사	2(-)	9,134(-)
한국도로공사	4(-)	26,353(-)	두 산	18(18)	8,988(11,192)
한 진	21(19)	21,596(21,307)	동 부	21(19)	6,083(5,831)
한국토지공사	2(-)	14,915(-)	현대정유	2(2)	5,884(7,243)
대한주택공사	2(-)	14,493(-)	합 계	356(303)	497,935(327,660)

주: ()안은 2001. 4. 2. 지정시 수치임

〈 2002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순위 〉

(2002. 4. 1. 기준, 단위 : 조원, 개)

순 위	기업집단명	자산총액	계열사수	비 고
1	한국전력공사	90.9	1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신규)
2	삼 성	72.4	63	"
3	엘 지	54.5	51	"
4	에스케이	46.8	62	"
5	현대자동차	41.3	25	"
6	K T	32.6	9	" (신규)
7	한국도로공사	26.4	4	" (신규)
8	한 진	21.6	21	"
9	포항제철	20.8	15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10	롯데	18.0	32	"
11	한국토지공사	14.9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신규)
12	대한주택공사	14.5	2	" (신규)
13	현 대	11.8	12	"
14	금 호	10.6	15	"
15	현대중공업	10.3	5	" (신규)
16	한 화	9.9	26	"
17	한국수자원공사	9.5	2	" (신규)
18	한국가스공사	9.1	2	" (신규)
19	두 산	9.0	18	"
20	동 부	6.1	21	"
21	현대정유	5.9	2	"
22	효 성	4.9	15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23	대 립	4.9	15	"
24	코오롱	4.6	29	"
25	제일제당	4.3	28	"
26	동국제강	4.3	6	"
27	하나로통신	4.2	8	"
28	한 솔	4.2	12	"
29	농업기반공사	4.1	2	" (신규)
30	담배인삼공사	4.0	2	" (신규)
31	신 세 계	3.9	10	"
32	동 양	3.8	16	"
33	현대백화점	3.3	10	"
34	현대산업개발	3.0	10	"
35	영 풍	2.8	24	"
36	대 상	2.4	12	" (신규)
37	동 원	2.3	17	" (신규)
38	대광산업	2.3	18	"
39	KCC	2.3	6	" (신규)
40	동양화학	2.3	19	"
41	대 성	2.1	32	" (신규)
42	한국타이어	2.1	6	" (신규)
43	부 영	2.1	4	" (신규)

공정위, 『경제월드컵 추진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3. 28.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경제월드컵 추진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대책』을 보고하였다.

월드컵을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의 계기로 활용키 위한 이날 보고회에는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정위가 보고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은 월드컵 관광객이 이용하는 음식, 숙박, 여행, 렌트카업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예방을 실시하고, 각종 사업자단체 및 민간기업들의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자율준수분위기를 확산 및 정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 여행객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월드컵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2. 25)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월드컵특별대책반』을 공정위에 설치(2. 16)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상의, 소비자·소비자단체 등 민간부문과 협조하여 올바른 경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월드컵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 숙박, 여행, 렌트카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및 사전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청소년계층 소비자시책 추진

- 인터넷 콘텐츠, 게임 및 후불식 전화결제, 음반·극장분야대상 -

공정위는 금년도 중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계층별 소비자시책 중 청소년대상 분야로 다수 청소년이 이용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청소년이 직접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해발생우려가 큰 인터넷 콘텐츠(후불식 전화결제업 포함), 게임, 영상·음반분야를 선정,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번 시책 추진을 위한 조사는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4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극장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서면조사에 착수하였다.

공정위는 금번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2~3월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연구소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 인터넷 콘텐츠, 게임분야의 사전정보제공 확대 및 사후피해구제절차 개선 ▶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폰 또는 ARS결제로 인한 피해 축소 ▶ 극장의 외부음식물 반입 제한 관행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번 청소년대상 소비자시책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적발보다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중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금번 시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들의 제보나 신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노인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상술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층별 소비자시책과 관련, 노인계층에 대해서 건강식품·노인용품과 유료주거시설의 2개 분야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다.

금번 시책은 노령인구화(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6% 차지) 및 노인계층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라 노인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시정대상은 경로잔치, 제품설명회 등을 빙자한 실버상품 강매 등 노인을 상대로 하는 기만적인 상술과 유료양로시설 등의 입주자에 대한 부당한 취

급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강식품·노인용품 분야 방문·통신·다단계판매 60개 사업자에 대하여 4월초부터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유료주거시설 분야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향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인소비자 대상 부당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한편, 노인에 대한 소비자교육 실시, 노인대상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담은 별도의 지침 작성 등 노인피해의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승인

최근 연간 골프장 이용객수가 1천만명을 넘을 만큼 골프장 이용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도 빈발하는 가운데, 골프장 이용약관 중 “경기시작후 이용료 환불제한”, “안전사고에 따른 골프장측의 손해배상 면책” 등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주요 사례이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서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2002. 3. 20. 승인하였다.

동 표준약관은 골프장 이용을 중도에 그만 둔 경우 구체적인 이용요금 환불기준 마련(제8조), 경기도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구체화(제17조),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 불이행시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함께 비회원 이용자에 대

해서는 입장료 총액의 10%범위내에서 예약금 징수 가능(제5조), 각종 물품의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 명시(제18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 명시(제10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 「부당내부거래 신고센터」 설치

중견기업연합회는 2002. 3. 25.(월) 사무국 건물 1층 로비(LG 마포빌딩)에서 공정위 이남기 위원장, 중견기업연합회의 이상운 회장, 유기정 명예회장, 백영훈 자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내부거래 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그 동안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제도 도입으로 부당내부거래의 자제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시장차원의 부당내부거래 감시기능은 미흡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차원의 자율감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회원사 등으로부터 제벌들의 부당내부거래 즉,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거래행위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신고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고자 「부당내부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의원입법으로 작년 6월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이 4. 17(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협력하에 가맹사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둘째,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재무상황, 가맹점의 부당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의무를 규정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고, 위반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금의 반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가맹계약기간중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열거, 넷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정의 성립시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공정위는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의 2/100 범위내), 벌칙부과가 가능하며, 동 법률은 2002. 1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인사

인사발령일 : 2002. 3. 22.

- ◎ 국장급 전보
심판관리관 / 박상용(심판관리1담당관)
(임용기간 : 2002. 3. 22~2004. 3. 21)
- ◎ 주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임명
김병배(공보관)

인사발령일 : 2002. 3. 23.

- ◎ 공보관 임명
이동규(파견복귀)

인사발령일 : 2002. 3. 26.

- ◎ 유학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 서기관 신동권
(휴직기간 : 2002. 3. 29~2003. 3. 28)

인사발령일 : 2002. 3. 28.

- ◎ 국장급 전보
국외직무훈련파견(미 워싱턴주정부)
/ 한영섭(정책개발기획단장)
(파견기간 : 2002. 3. 30~2003. 3. 29)

인사발령일 : 2002. 3. 30.

- ◎ 해외 파견
미국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te) / 서기관 신호현
(파견기간 : 2002. 3. 30~2003. 3. 29)

인사발령일 : 2002. 4. 1.

- ◎ 부이사관(3급) 대우
경쟁국 유통거래과장 / 서기관 옥화영
공정거래위원회 / 서기관 김순중

인사발령일 : 2002. 4. 2.

- ◎ 명예특별승진 및 퇴직
이사관 임영철(하도급국장) - 변호사 개업

인사발령일 : 2002. 4. 4.

- ◎ 국장급 전보
하도급국장/ 부이사관 백승기(단체과장)

인사발령일 : 2002. 4. 18.

- ◎ 과장급(서기관) 전보
심판관리1담당관 / 김길태(독점관리과장)
국제협력과장 / 유희상(기업결합과장)
기업결합과장 / 김석호(심판관리1담당관실)
단체과장 / 김태형(하도급1과장)
하도급1과장 / 최정호(광주사무소장)
광주사무소장 / 여형통(유통거래과)
부산사무소장 / 김정주(부산사무소장 직무대리)
하도급2과장 / 전신기(하도급2과장 직무대리)
심판관리3담당관 / 송준호(심판관리3담당관 직무대리)

※ ()은 前補職